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
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
심사보고서

2022년 10월 20일
전문위원 권 오 숙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2년 9월 30일

나. 발 의 자: 김성한 의원 외 9명

다. 회부일자: 2022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 10. 20.)

2. 제안설명 요지

□ 제안이유

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취업준비생 면접비용에 대한 지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비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 이에 수입이 없는 응시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면접비를 지원하여 면접 참석률 제고 등 인재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지원대상을 정함.(안 제2조)
- 나. 지급기준을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(안 제3조)
- 다. 중복금지 규정을 정함. 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(2022. 10. 6. ~ 10. 12.) 결과: 의견 없음

4.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권오숙)

가. 제정취지

-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공무원 시험 중 면접 전형에 출석한 응시생들에게 면접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2조는 지원 대상을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제한 함.
- 안 제3조는 지급기준을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.
- 안 제4조는 응시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면접 관련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함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많은 취업준비생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취업 준비 과정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면접비를 지원하는 것으로
- 현재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면접비용에 대한 지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.
- 참고로 한 취업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68%가 면접 지출 비용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응답하였으며, 비용 부담 때문에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32%나 되었음. 또한 전체 응답자의 79.5%는 지원자에게 면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실제 구직자들에게는 면접 준비 비용 부담이 구직활동 및 면접 응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음.
- 강서구의회의 면접비 지원대상은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가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로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¹⁾에 따라 2023년 추가 6명의 정책지원관 채용과 그밖에 임기제 채용 등을 고려하여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예상하고 중소기업 면접비 평균 금액인 3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소요예산은 연간 150만원으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.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
-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생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면접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면접 참석률 제고 등 인재 채용의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